

제262회 정례회

2007. 7. 13(금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고 일 준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7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4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, 부서별 분장사무,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가.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

- 신설 부서 : 3개부서(자원관리팀, 균형정책팀, 투자유치팀)
- 명칭변경 부서(16개 부서)
 - 경제투자본부(2개 부서)
 - 경제과 → 경제정책팀
 - 기업지원과 → 기업지원팀
 - 균형발전본부(3개 부서)
 - 지역개발과 → 지역개발팀
 - 교통과 → 교통물류팀
 - 건축문화과 → 건축팀
 - 농정본부(5개 부서)

- 농정과 → 농업정책팀
- 농산지원과 → 농산지원팀
- 원예유통과 → 원예유통팀
- 축산과 → 축산팀
- 산림과 → 산림녹지팀
- **건설재난관리본부(2개 부서)**
 - 도로과 → 건설정책팀
 - 민방위안전관리과→하천관리팀
- **복지여성국(2개 부서)**
 - 사회복지과 → 복지정책과
 - 체육청소년과→청소년아동과
- **문화관광환경국(2개 부서)**
 - 문화예술과 → 문화정책과
 - 관광과 → 관광진흥과

○ 부서간 위임사무 조정

- 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(경제정책팀→기업지원팀)
- 전기, 에너지이용, 계량기 등에 관한 사항
(기업지원팀→자원관리팀)
-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(지역개발팀→균형정책팀)
- 지방하천 등에 관한 사항(민방위안전관리과→하천관리팀)
- 조수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(산림녹지팀→환경과)
- 지방산업단지개발 등에 관한사항(지역개발팀→투자유치팀)

나. 부서별 주요개정내용

【총무과】

- 실국별 정원제 운영에 따라 자치연수원, 생명산업추진단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으로 확대 위임
- 농업기술원 5급상당 지방연구관·지도관 공무원 원내 전보권 위임사무 신설

【자원관리팀】

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“계량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”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【교통물류팀】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·군수 사무로 변경된 “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유상 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의 사무” 삭제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“마을버스·특수여객 자동차·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무”가 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어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【건축팀】

- 「주택법」의 도지사 사무인 “공사 착수신고 및 기간연장” 사무를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【농산지원팀】

- 도지사 사무인 “도유행정재산(구거)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 사무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충청북도공유재산조례」에 의거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【산림녹지팀】

- 「산림법」 폐지에 따라 “보안림에서의 제한행위 허가”, “조림·육림·벌채등에 관한사무”를 삭제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인 “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사무”를 사무처리의 효율성·경제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
- 「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」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“군지역 또는 읍·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가로수관리에 관한 사무”를 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【보건위생과】

- 「전염병 예방법」 개정에 따라 “성병매개 우려자에 대한 건강진단 명령”, “소독업의 신고”, “예방접종의 용도 변경”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·군수 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

【환경과】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도지사 사무인 “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”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【수질관리과】

- 「먹는물관리법」의 도지사 사무인 “유통샘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검사”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·경제성 및 주민

편의를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위임

- 「지하수법」 개정에 따라 “지하수관련 사무”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·군수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도정목표인 「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」 실현 및 역동적 도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. 12월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,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동시에,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여 충청북도 각 부서의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 하겠음.

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는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,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,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등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시기 (2006.12.22, 조례 제2965호)를 감안할 때 다소 지체되었다고 여겨짐.

향후에는 자치법규에 의한 책임행정 구현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확보 및 도민편의를 위해서 보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